

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

(의안번호 제560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7. 13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7. 13

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1999. 7. 21

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이유

- 0 호적법 제132조 내지 제1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호적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한 제반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조례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- 0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0 호적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이 호적법 제132조 내지 제1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며,
- 0 또한 호적법에 조례를 제정토록 하는 위임의 근거가 없으며, 법령과 상치되는 부분도 있어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0 문 : 호적과태료 부과 근거는

- 답 : 호적법 및 관련조례 근거에 의거 부과·징수하였으나 호적법령과 이중 또는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 폐지함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1999. 7. 2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